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3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정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법」 과의 중복 규정 삭제(제3,4조)
- 나.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1항, 제10조제1항)
-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14조)
- 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제16조)
-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제8조제2항)
- 바. 「주민투표법」 근거조항 변경 및 별지 서식 수정(제17조~제18조)
- 사. 부칙 신설(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주민투표법」 (제5조~제28조), 「공직선거법」 (제10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8. 11. ~ 8. 3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2022.4.26.) 및 「공직선거법」 개정(2022.1.18.) 사항을 반영하고(안 제3조, 제4조),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하는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인 「주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민투표법」 제12조의2(1)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중 연령조정의 적정성과 옥외집회 허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1)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세부 내용 검토

1) 연령 관련 주민투표법 개선사항 반영(안 제3조)

-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2022.4.5)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 기준과의 통일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 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 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 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두고 있고,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 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외국인은 -----.

-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정 법률²⁾에서는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음.
- 또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인정 기준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³⁾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2)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 국내 지방자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주민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임.
-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권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의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 3)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제4조 삭제)

- 안 제4조 삭제는 주민투표의 대상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전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주민투표법」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법 제7조제1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법 제7조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는 바,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u></p> <p><u>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u>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u></p> <p><u>3.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u></p>	<p><삭 제></p>

- 동 개정안은 법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문구가 삭제되어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부재에 따른 해석상 혼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주민투표법」 제7조 개정 전·후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p>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u>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p>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3)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8조 1항, 안 제10조 1항)

- 안 제8조 1항은 전자서명 운영을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 출력물을 열람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u>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 ----- . <u>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u></p> <p>1. <u>성명</u> 2. <u>생년월일</u> 3. <u>주소 또는 체류지</u> 4. <u>서명 연월일</u></p>
<p>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u>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u>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u>청구인서명부</u> 또는 그 사본을 자치구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u>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u>----- ----- <u>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u> -----.</p>

- 전자서명청구제도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서명방식에 더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전자서명 자료의 데이터 보관 및 자료 유출·소실 등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의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⁴⁾ 신설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4)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p>를 둔다.</p> <p>1. <u>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p> <p>2. <u>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 신청의 심사·결정</u></p> <p>3. <u>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u></p> <p>4. <u>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신설></p> <p><신설></p>	<p>(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1. <u>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 신청의 심사</u></p> <p>2. <u>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p> <p>3. <u>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u></p> <p>4. <u>그 밖에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p> <p>② <u>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으며,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1. <u>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u></p> <p>2. <u>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p> <p>3. <u>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u>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 다만,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 위촉으로 인한 심의회 운영상 객관성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차례 연임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u>제13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u></p> <p><u>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u> <u>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u> <u>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u>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u>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⁵⁾에서는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심의회 운영 등(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심의회 의장의 회의소집권(안 제14조제1항), 직무대행(안 제14조제2항), 회의소집 요건(안 제14조제3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u>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②·③ (생략)</p>	<p>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u>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u></p> <p>② <u>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③ <u>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u></p> <p>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④ <u>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삭제>
⑤ <u>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u>	<삭제>

-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 구성시 부의장 1명이 포함되어 있는 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의장 역할 축소 및 의장의 자의적인 위원 지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심의회 간사(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u>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u> ② <u>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u>

- 다만, 간사를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 운영으로 비취질 여지는 없는지, 주민투표 관련 부서장(행정국장 또는 과장)이 맡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심의회 운영세칙(안 제16조)

- 안 제15조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운영세칙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운영세칙 신설이 전체적인 범규범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9)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공직선거법」 제102조⁶⁾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금지 및 옥외집회 시 휴대용 확성장치 이용 가능 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의 옥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u>호별방문</u></p> <p>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u>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u></p> <p><신설></p>	<p>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u>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회와 토론회를 말한다)</u>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옥외집회를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u>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u></p>

- 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적 한계가 발생하는 사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옥외집회 허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법령개정 요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2항)

- 안 제8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7) 개정에 따라,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②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u>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② ----- -- <u>구분하여</u> ----- ----- <u>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u>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구역 단위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 지에 대한 하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통·리·반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 반영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1)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0조제3항~제4항)

- 안 제10조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 부재로, 그리고 제4항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u>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u> <u>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u>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삭 제> <삭 제>

- 다만, 안 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 외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4항 삭제의 경우도 ‘공표시’에 열람기간·시간, 장소를 공고하라는 의미이므로,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⁸⁾의 내용과는 정확히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별지 서식 수정 및 「주민투표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9조, 안 제20조)

-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공표방법 등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8조 (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p>	<p>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p> <p>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p> <p>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p>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p>

현행	개정안
<p><u>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u></p>	<p><u>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u></p>

- 다만,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의 경우 현행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있는 바, 정확한 주소 기재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상 상세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식 제3호 및 제4호 서식중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각 서식의 ‘서울특별시장’ 명의를 누락되어 있는 바, 이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표준조례안을 참고하면서 기재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율특별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4.>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율특별시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서율특별시장 관할구역 중 특정 구, 동 또는 통반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 특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 특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한다.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예안참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 특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예안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등 특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4.>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서류: 관련 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청구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7. 14.>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서류: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13) 문구 수정 및 의미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안 제17조)

○ 안 제10조제2항 및 제17조는 문구수정을 통해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동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기본원칙⁹⁾에 따라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p> <p>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p> <p>②----- ----- . ----- ----- --- <u>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u> --- ----- .</p>
<p>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u>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u> 날부터 7일 이내에 <u>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u>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u>제5항에 따른</u>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법 제12조제7항에 따른</u>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p>	<p>제17조(처리기간) ①----- ----- <u>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u>----- <u>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u> ----- .</p> <p>②----- <u>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u> ----- ----- ----- ----- --- <u>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u> ----- ----- ----- .</p>

9) <알법의 기본원칙>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킨다.
-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다.

현 행	개 정 안
<p>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u>그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u>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 ----- <u>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u>-----.</p>

14)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칙을 신설하여 「주민투표법」 개정 규정 시행일에 맞춰 조례(안)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부칙 개정(신설) 사항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

(참고자료)

주민투표 현황

(2021. 12. 31.현재)

□ 투표 실시

구분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지역	청구권자	투표일	주민투표명 (추진사유)	투표율 (%)	투표결과(%) (진행상황)
투표 실시 (12건)	2005.06.21.	제주도	행정자치부 장관	2005.07.27.	행정구조 개편	36.7%	단일광역자치(57.0%) 현행 유지(43.0%)
	2005.08.12.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자치부 장관	2005.09.29.	청주-청원 통합	35.5%	찬성(91.3%) 반대(8.7%)
		충청북도 청원군				42.2%	찬성(46.5%) 반대(53.5%)
	2005.09.15.	전라북도 군산시	산업자원부 장관	2005.11.02.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70.2%	찬성(84.4%) 반대(15.6%)
		경상북도 포항시				47.7%	찬성(67.5%) 반대(32.5%)
		경상북도 경주시				70.8%	찬성(89.5%) 반대(10.5%)
		경상북도 영덕군				80.2%	찬성(79.3%) 반대(20.7%)
	2011.02.08.	서울특별시	○○○	2011.08.24.	무상급식 지원범위	25.7%	미개표 종결
	2011.09.14.	경상북도 영주시	○○○	2011.12.07.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	39.2%	평은리(91.7%) 오운리(8.3%)
	2012.09.0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군수	2012.10.17.	남해에너지파크 유치동의서 제출	53.2%	찬성(48.9%) 반대(51.1%)
	2012.05.16.	충청북도 청원군	행정안전부 장관	2012.06.27.	청주-청원 통합	36.8%	찬성(79.0%) 반대(21.0%)
	2013.05.30.	전라북도 완주군	안전행정부 장관	2013.06.26.	전주-완주 통합	53.2%	찬성(44.7%) 반대(55.3%)
2017.03.15.	강원도 평창군	○○○	2019.02.01.	미탄면 주민지원기금 관리방안 결정	61.7%	찬성(97.7%) 반대(2.3%)	
2019.09.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수	2019.10.16.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요구서 제출	52.81%	찬성(64.7%) 반대(35.2%)	
2019.12.19.	대구 군위·의성군	국방부 장관	2020.01.21.	대구 군 공항 이전	군위 (우보)	80.6%	찬성률50% +투표율50%(78.4%)
					군위 (소보)		찬성률50% +투표율50%(53.2%)
					의성 (비안)	88.6%	찬성률50% +투표율50%(89.5%)
2020.06.03.	충남 천안시	천안시장	2020.06.26.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10.3%	미개표 종결	

구분	대표자 증명서 교부일 또는 접수일	지 역	청구권자	주민투표명 (추진사유)	주요 진행상황
서명부 제출 · 청구 각하 (3건)	2009.11.30.	경기도 안산시	○○○	문화복합동구장 건립사업 찬반	- 서명부 미제출('10.3.15.)
	2014.12.31.	경상남도	○○○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 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거부('13.7.18.) - 거부처분 취소판결('14.12.24.) - 서명부 제출('15.7.9.) - 서명인수 미달로 각하('15.10.16.)
	2015.10.01.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 임란문화공원 사업 찬반	- 서명인수 미달로 각하('16.1.7.)

※ 출처: 행정안전부 발표자료(2022. 2. 28.)